

제 11 장 전기통신

제 11.1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원가지향이라 함은 원가에 기초함을 말하며, 합리적인 이윤을 포함할 수 있으며, 다른 설비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다른 비용산출방법을 수반할 수 있다.

최종이용자라 함은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한 공중전기통신서비스의 최종소비자 또는 가입자를 말하나,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공중전기통신서비스의 공급자는 제외된다.

필수설비라 함은 다음과 같은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의 설비를 말한다.

- 가. 하나의 또는 제한된 수의 공급자에 의하여 배타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제공되고, 그리고
- 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적, 기술적으로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설비

설비기반사업자라 함은 다음과 같은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를 말한다.

- 가.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
- 나. 싱가포르에 대하여는, 설비기반사업자

지배적사업자라 함은 다음의 결과로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의 관련 시장에서 참가조건(요금 및 공급 관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본전기통신서비스 공급자를 말한다.

- 가. 필수 설비의 통제, 또는
- 나.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

망구성요소라 함은 공중전기통신서비스의 공급에 사용되는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하며, 그러한 설비 또는 장비에 의하여 공급되는 특징, 기능 및 성능을 포함한다.

비차별적이라 함은 동일한 여건 하에서 동종의 공중전기통신전송망이나 서비스의 그 밖의 사용자에게 부여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공중전기통신전송망이라 함은 정의된 망 종단점 간의 전기통신을 허용하는 공중전기통신 기반구조를 말한다.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라 함은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및/또는 공중전기통신전송서비스를 말한다.

공중전기통신전송서비스라 함은 일방 당사국이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명시적 혹은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말하며, 이에는 전신, 전화, 텔레스 및 데이터 전송이 포함되고, 전형적으로 2개 이상의 지점 간에 고객이 전달하는 정보를 내용이나 형태의 변화 없이 실시간 전송한다.

서비스 공급자라 함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을 말한다.

전기통신이라 함은 모든 전자자기적 수단에 의한 신호의 전송 및 수신을 말한다. 그리고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소비자와 서비스 공급자를 말한다.

제 11.2 조 적용범위¹¹⁻¹⁾

1. 이 장은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이의 이용 및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11-1) 이 장에서 당사국의 의무는 양 당사국의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적용된다.

2. 이 장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유선방송 또는 무선방송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과 같이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타방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를 설치·구축·취득·리스·운영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당사국에게 허가할 것을 요구하는 것. 또는

나. 일반적으로 공중에 공급되지 아니하는 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를 설치·구축·취득·리스·운영 또는 공급할 수 있도록, (또는 당사국에게 서비스 공급자를 강제하여 동 행위를 하도록) 당사국에게 요구하는 것

제 11.3 조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에의 접근 및 이용

1.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제2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을 포함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시의적절하고, 투명한 조건 하에서 자국 영역 내 또는 국경을 통과하여 제공되는 전용임대회선을 포함한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하는 것을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다음이 허용되도록 보장한다.

가. 공중전기통신전송망에 상호 연결되는 단말기 또는 그 밖의 장비의 구입 또는 리스 및 부착

나. 리스(전용) 또는 소유 회선의 당사국 영역 안의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와의 상호접속, 또는 다른 서비스 공급자의 리스 또는 소유 회선과의 상호접속

다. 교환·신호 및 처리 기능의 수행

라.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전기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비스 공급자가 선택한 통신방식 운영규약의 사용, 그리고

마. 리스(전용) 또는 소유 회선을 통하여 개인 또는 복수의 최종이용자에게 각 당사국의 국내 법률 및 규정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범위 및 종류의 서비스 공급

3.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사내통신을 포함하여 자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그 국경을 통과하여 정보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타방 당사국 영역 안에서 데이터베이스 내 정보나 그 밖의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접속을 위하여 공중전기통신망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메세지의 보안 및 비밀 또는 최종이용자의 사적인 자료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으나, 그러한 조치가 서비스 교역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혹은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5. 각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대하여 어떤 조건도 부과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 가.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및 서비스 공급자의 공공서비스 책임, 특히 그들의 망 또는 서비스를 대중이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공급자의 능력 보장, 또는
- 나.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의 기술적 완전성 보호

6. 당사국이 제5항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의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조건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상호연결장치 통신방식규약을 포함하여, 그러한 망 또는 서비스와의 상호접속을 위한 명시된 기술적 상호연결장치를 이용하기 위한 요건
- 나. 필요한 경우, 그러한 서비스의 상호운용가능성을 위한 요건
- 다. 공중전기통신전송망과 상호 연결되는 단말기 또는 다른 장비의 형식 승인과 그러한 장비의 공중전기통신망에의 부착과 관련된 기술적 요건, 또는,
- 라. 통보, 등록 및 면허

제 11.4 조 지배적사업자의 행위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의 지배적사업자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설비기반사업자인 자신, 자회사, 계열회사, 또는 비계열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자국 영역 안에서 허가받은 타방 당사국의 설비기반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 가. 동종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의 이용가능성·공급·요금, 또는 품질, 그리고
- 나. 상호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상호연결장치의 이용가능성

필요한 경우, 일방 당사국은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의 그러한 공급자, 자회사, 계열회사 및 비계열 서비스 공급자가 동일한 상황에 있는지에 근거하여 그러한 대우를 평가하여야 한다.

경쟁보장장치

2. 가. 각 당사국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자국 영역 안의 지배적사업자인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반경쟁적 행위를 하거나 계속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유지한다.

- 나. 가호의 목적상 반경쟁적 행위는 다음을 포함한다.
 - (1) 반경쟁적 교차보조에의 관여
 - (2) 경쟁자로부터 취득한 정보의 이용으로 인한 반경쟁적 결과 초래
 - (3)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의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필수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 및 상업적으로 관련있는 정보의 시의적절한 이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
 - (4) 불공정 경쟁을 야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서비스 가격 설정

망 세분화

3. 가.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안의 지배적사업자가 자국에서 허가받은 타방 당사국의 설비기반사업자에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망 구성요소에 대한 접근을 세분화된 망으로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인 조건과 원가지향적인 요금으로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 나. 각 당사국은 국내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세분화의 기술적 실현가능성, 관련시장의 경쟁 상태에 기초하여, 가호에 따라 자국 영역 안의 지배적사업자가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느 망 구성요소를 필요

로 하는지 결정할 수 있다.

설비 병설

4. 가.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안의 지배적사업자가 자국에서 허가받은 타방 당사국의 설비기반사업자에게 상호접속 또는 세분화된 망 구성요소에 필요한 장비의 물리적 설비 병설을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인 조건과 원가지향적인 요금으로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 나. 기술적 이유 또는 공간적 제한으로 인하여 가호에 따른 물리적 설비 병설이 비현실적인 경우,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그 지배적사업자가 설비기반사업자와 협력하여 설비병설을 위한 지점조사를 포함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도록 보장한다.
- 다. 각 당사국은 국내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자국 영토 안의 어떠한 영역이 가호 및 나호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재판매

5. 가.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안의 지배적사업자가 최종 이용자에게 소매로 공급하는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의 재판매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또는 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 나. 각 당사국은 국내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자국 영토 안에서 재판매의 유형 및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전주·관로·도관

6. 가. 각 당사국은 자국 영토 안의 지배적사업자가 자국에서 허가받은 타방 당사국의 설비기반사업자에게 그러한 지배적사업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전주·관로·도관 또는 자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밖의 구조물에 대한 접근을 다음과 같이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 (1) 시의적절한 방법. 그리고
 - (2)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인 조건과 원가지향적인 요금

나. 각 당사국은 관련시장에서 경쟁상태에 근거하여 가호에 따라 자국 영역 안의 지배적사업자가 접근을 허용하여야 할 전주·관로·도관 및 그 밖의 구조물을 국내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번호 이동성

7. 각 당사국은 자국이 지정한 서비스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도 안에서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인 조건에 따라 자국 영역의 지배적사업자가 번호 이동성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상호접속

8. 가. 일반 조건

상호접속의 보장

각 당사국은 국내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한도 안에서 설비기반사업자와 그 밖의 설비기반사업자 또는 서비스기반사업자 간의 상호접속을 보장한다.

지배적사업자와의 상호접속

각 당사국은 지배적사업자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점에서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상호접속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제공된다.

- (1) 비차별적인 조건(기술적 표준 및 세부사양 포함) 및 요금, 그 자신의 동종 서비스, 또는 비계열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 서비스 또는 자회사 또는 계열사의 동종 서비스에 대하여 공급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는 품질
- (2) 시의적절하게,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가능성을 고려하여, 충분히 망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사업자가 서비스에 필요하지 아니한 망 구성요소 혹은 서비스를 위하여 지불할 필요가 없는 원가지향적인 요금과 조건들(기술표준 및 세부사양 포함). 그리고
- (3) 요청이 있을 때, 대다수 이용자가 접속하는 망 종단점 외의 지점

들에서도 추가적인 소요설비 구축을 위한 비용을 부과하는 조건

나. 상호접속 협정의 투명성

각 당사국은 지배적사업자가 자신의 상호접속 협정 또는 상호접속 제공지침을 공개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다. 상호접속 협상 절차의 공개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안의 지배적사업자와의 상호접속 협상에 적용 가능한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

라. 지배적사업자와 체결한 상호접속 협정의 공개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안의 지배적사업자가 자신의 상호접속 협정을 통신규제기관에 신고하도록 요구한다.

(2) 각 당사국은 상호접속을 하려는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 안의 지배적사업자가 그 밖의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체결한 상호접속 협정을 열람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마. 상호접속 분쟁 해결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안에서 지배적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요청한 타방 당사국의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합리적이고 공개된 기간 내에 상호접속 조건 및 요금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에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전용회선의 공급 및 가격책정¹¹⁻²⁾

9.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안의 전용회선 서비스의 지배적사업자가 타방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시의적절하고, 투명한 조건과 요금에 따라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인 전용회선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보장한다.

**제 11.5 조
규제기관의 독립**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규제기관이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분리되고,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11-2) 본 조항에서의 의무는 전용회선을 세분화된 망 구성요소로 제공하여야 할 의무는 아니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통신규제기관의 결정 및 절차가 모든 시장 참가자에게 공정하도록 보장한다.

제 11.6 조 보편적 서비스

각 당사국은 자국이 유지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 중립적인 방식으로 시행하고, 각 당사국의 보편적 서비스 의무가 각 당사국이 정의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하여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제 11.7 조 허가절차

1. 당사국이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허가를 취득하도록 요구할 때,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 가. 적용되는 허가 기준 및 절차
- 나. 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에 이르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 그리고
- 다. 허가조건

2. 각 당사국은, 요청이 있을 때, 허가 거부 사유를 신청자가 알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11.8 조 희소자원의 배분과 사용¹¹⁻³⁾

1. 각 당사국은 주파수·번호·관로·구축권을 포함한 희소자원의 배분과 이용에 관한 절차를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시행한다.

11-3) 양 당사국은 전파의 배분 및 할당, 주파수 관리에 관한 결정이 그 자체만으로 제9.5조, 제10.7조와 불일치하는 조치는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조항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면 공중전기통신전송서비스 사업자의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역 및 주파수 관리 정책을 시행할 권리를 갖는다. 양 당사국은 기존의 그리고 미래 수요를 고려하여 주파수 대역을 할당할 권리를 또한 보유한다.

2. 각 당사국은 할당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각 정부가 할당 또는 배분한 주파수의 세부적 확인을 제공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제 11.9 조 시 행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신 규제기관이 이 장의 의무와 관련하여 국내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와 권한을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절차와 권한은 재정적 처벌, 시정명령 또는 사업권의 수정·정지 및 취소를 포함하는 효과적인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제 11.10 조 국내 통신분쟁의 해결

청구

1.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이 장에서 규정한 사안을 다루는 국내조치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신규제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기관에 시의적절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의신청

2. 당사국은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통신규제기관의 결정에 불만족할 경우, 해당 규제기관에 이의신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어느 당사국도, 적절한 당국이 통신규제기관의 결정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지 아니하는 한, 이의신청이 통신규제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근거가 되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항소

3. 각 당사국은 전기통신규제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그러한 결정에 대하여 독립적인 사법 및 행정당국에 항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보장한다.

제 11.11 조 투 명 성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 가. 통신 규제기관의 규범제정과 그 근거를 공표하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에게 공개할 것
- 나. 통신 규제기관이 제안한 규범제정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공고 및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이해당사자에게 제공.¹¹⁻⁴⁾ 그리고
- 다.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조치를 공개하여야 하며 다음이 포함된다.
 - (1) 서비스 요금 및 그 밖의 조건
 - (2) 기술적 상호연결의 세부사항
 - (3) 단말기 또는 그 밖의 장비의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부착에 적용되는 조건,
 - (4) 통보, 허가, 등록 또는 면허 요건이 있는 경우, 면허 요건, 그리고
 - (5) 표준관련 조치의 준비, 수정, 채택을 담당하는 기관에 관한 정보의 공개

제 11.12 조 다른 장과의 관계

이 협정에서 이 장과 다른 장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이 장은 불합치하는 한도 내에서 우선 적용된다.

제 11.13 조 국제기구 및 협정과의 관계

양 당사국은 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의 전세계적 호환성과 상호운용성을 위한 국제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국제전기통신연합과 국제표준화기구를 포함한 관련 국제기구의 작업을 통하여 이러한 표준을 촉진시킨다.

11-4) 나.의 의무는 각 당사국의 국내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